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방위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무기체계의 경우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말하며,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말한다.

제6장에 제6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3(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 ①

방산업체가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업직원으로 채용(보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선임 또는 채용 예정일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승인 대상자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 증명서 사본
3. 승인 대상자의 신원진술서 및 보안서약서
4. 승인 대상자의 본국 및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범죄 경력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3조의3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계획서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1. 승인 대상자가 취급하게 될 방위산업기술의 중요도 및 국가안보에 미치는 파급효과
2. 승인 대상자의 국적, 경력, 외국 정보기관과의 연계 가능성 등 신원 특이사항
3. 승인 대상자의 기술유출 등 보안관련 법령위반 이력
4.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계획서상 보안대책의 적절성
5. 「방산기술보호법」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③ 방산업체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을 제1항에 따른 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0조의3 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특정 군사기밀 또는 핵심 방위산업 기술에 대한 접근 제한
2. 직무 성격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대상자의 업무용 정보통신망과 외부 인터넷망의 완전한 분리
3. 주기적인 보안교육 이수 및 보안점검 실시
4. 대상자가 퇴직하거나 직무가 변경될 경우의 즉각적인 신고

-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조건부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방산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승인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신원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방산업체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가 취급하는 방위산업기술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2(사업타당성조사) 법 제 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 규모 신규사업”이란 총사업비 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말한다. <후단 신설>	제21조의2(사업타당성조사) ---- ----- ----- ----- ----- ----. <u>무기체계의 경우 총사업 비가 1,000억원 이상인 신규사 업을 말하며,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인 신규사업을 말한다. 무기체 계의 경우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말하며,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총사업비 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말한다.</u>
<신 설>	<u>제64조의3(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 인) ① 방산업체가 법 제50조의 3제1항에 따라 외국인 및 복수 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업직원으로 채 용(보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려는 경우 선임 또는 채용 예 정일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u>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에
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승인 대상자의 국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여
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

3. 승인 대상자의 신원진술서
및 보안서약서

4. 승인 대상자의 본국 및 대한
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범죄
경력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
3조의3에 따른 외국인 및 복
수국적자 관리계획서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
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1. 승인 대상자가 취급하게 될
방위산업기술의 중요도 및 국
가안보에 미치는 파급효과

2. 승인 대상자의 국적, 경력, 외
국 정보기관과의 연계 가능성
등 신원 특이사항

3. 승인 대상자의 기술유출 등

보안관련 법령위반 이력

4.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상 보안대책의 적절성

5. 「방산기술보호법」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③ 방산업체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을 제1
항에 따른 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
른 승인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
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
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0조의
3 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특정 군사기밀 또는 핵심 방
위산업 기술에 대한 접근 제
한

2. 직무 성격에 따라 필요한 범
위에서 대상자의 업무용 정보
통신망과 외부 인터넷망의 완
전한 분리

3. 주기적인 보안교육 이수 및

보안점검 실시

4. 대상자가 퇴직하거나 직무가
변경될 경우의 즉각적인 신고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
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조건부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방산업체에 서면으로 통보
하고, 승인하는 경우에는 승인
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
항에 따른 신원조사 등에 상당
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1회
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방산업체는 제5항에 따라 승
인을 받은 외국인 및 복수국적
자가 취급하는 방위산업기술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방위
사업청장으로부터 재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및 복수
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방위사업청
장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2) 748 - 5674